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(임오경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1314

발의연월일: 2024. 7. 2.

발 의 자 : 임오경 · 서영교 · 한정애

박 정ㆍ이성윤ㆍ이기헌

한민수 · 임미애 · 김용민

강유정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상 대규모점포 또는 전통상업보존구역에 준대규모점포를 개설하려는 자는 영업 시작 전에 상권영향평가서 및 지역협력계획서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·시장·군수·구청장에게 등록하도록 되어 있는바, 이는 출점 예정지 반경에 있는 소상공인들과 전통시장에 미칠 영향을 종합적으로 파악하여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것임.

그러나 상권영향평가서의 작성주체가 대규모점포등을 개설·변경하려는 자이고 이 상권영향평가서를 기초자치단체장이 검토하므로 기초 자치단체와 인접한 광역적인 범위의 상권에 끼치는 영향을 검토하기에 어려움이 있음.

특히 대형마트·쇼핑몰 등 대규모점포가 주변상권에 미치는 영향은 행정구역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인접지역 지자체와의 협 의 강화를 통해 건전한 상거래질서를 확립하고 소상공인들과 전통시 장을 보호할 필요가 있음.

이에 대규모점포등의 입점 지역과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거리 이내에 있는 인접 특별자치시·시·군·구의 협의회 의견까지 청취하도록 하여 상권영향평가의 공정성 및 객관성을 확보하고자 함(안제8조제6항 및 제7항).

법률 제 호

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

유통산업발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8조제6항 중 "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"를 "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대규모점포를 개설하거나 제13조의3에 따른 전통상업보 존구역에 준대규모점포를 개설하려는 자로 하여금 산업통상자원부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상권영향평가서 및 지역협력계획서를 첨부하 여 제출토록 요구할 수 있다"로 하고, 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이 경우 점포의 소재지 특별자치시장·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점포의 개설 및 변경에 관하여 인접지역의 특별자치시장·시장·군수· 구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.

제8조제7항 중 "청취하여야 하며"를 "청취하되 등록하려는 점포의 소재지로부터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거리 이내의 범위 일부가인접 특별자치시·시·군·구에 속하여 있는 경우 인접 특별자치시·시·군·구에 소속된 협의회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하며"로 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• 구조문대비표

혅 개 정 행 아 제8조(대규모점포등의 개설등록 제8조(대규모점포등의 개설등록 및 변경등록) 및 변경등록) ① ~ ⑤ (현행과 같음) ① ~ ⑤ (생 략) ⑥ 제5항에 따라 신청 사실을 통보받은 인접지역의 특별자치 시장 · 시장 · 군수 · 구청장은 신청 사실을 통보받은 날로부 터 20일 이내에 개설등록 또는 변경등록에 대한 의견을 제시 ----의견을 제시 할 수 있다. <후단 신설> 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대 규모점포를 개설하거나 제13조 의3에 따른 전통상업보존구역 에 준대규모점포를 개설하려는 자로 하여금 산업통상자원부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상권영 향평가서 및 지역협력계획서를 첨부하여 제출토록 요구할 수 있다. 이 경우 점포의 소재지 특별자치시장 · 시장 · 군수 · 구 청장은 점포의 개설 및 변경에 관하여 인접지역의 특별자치시 장・시장・군수・구청장과 협 의하여야 한다.

① 특별자치시장·시장·군수 ① ·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 ·- 받은 상권영향평가서 및 지역 ·- 협력계획서를 검토하는 경우 협의회의 의견을 <u>청취하여야</u> ·- 하며, 필요한 때에는 대통령령 록 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에 이에 산대한 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. 건

| (7) |
|------------------|
| |
| |
| |
| <u>청취하되 등</u> |
| 록하려는 점포의 소재지로부터 |
| 산업통상자원부렁으로 정하는 |
| 거리 이내의 범위 일부가 인접 |
| 특별자치시・시・군・구에 속 |
| 하여 있는 경우 인접 특별자치 |
| 시ㆍ시ㆍ군ㆍ구에 소속된 협의 |
| 회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하며- |
| |